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3월 2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김**	김** 1954-01-1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	무단전출
박**	박** 1967-03-12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4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51-11-23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	무단전출
최**	최** 1986-08-16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5길	무단전출
천**	천** 1970-08-1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가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0-07-26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김**	장** 1964-04-2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94-05-1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89-11-23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2-04-1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김**	박** 1988-06-1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강**	강** 1966-01-2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백 은경 문의전화 : 02-3396-6716~8)

2013년 03월 15일

신당제1동장 인